의안번호	제445호
의결연월일	2017.12.7.

-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11. 20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17. 11.22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17. 12. 7.

제23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재생과장 함용섭)

가. 제안이유

○ 예산-당진 공업용수도 통합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운영관리업체인 「한국 수자원공사」와 위수탁협약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 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위탁에 따른 예산군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

○ 위탁기간: 2017. . ~ 2036. 12. 31.(20년)

시 설 명	위 치	운영방식	위탁기간 (예정)	비	고
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(배수지3,가압장1, 관로27.8km)	예산군 일원	민간위탁	2017 ~ 2036. 2.31. (20년)		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박 상 덕)

○ 예산-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예산군내 예당일반산업단지등 4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기 위하여

○ 예산군 공업용수공급시설 배수지3개소, 가압장 1개소, 관로27.8㎞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○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 략

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